

「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」 신규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
<p>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관리대상화물”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·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.</p> <p>가. 「관세법」 제135조에 따라 입항보고서 및 적재화물목록을 제출받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검사대상화물(검색기검사화물, 즉시검사화물, 반입후검사화물 및 수입신고후검사화물) 및 감시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세관장이 「관세법」 제135조에 서 규정한 입항보고서 및 적재화물목록을 제3조에 따라 심사하여 선별한----- ----- -----</p>	<p>○ 세관 간 교차선별제도 운영 반영</p> <p>○ 조문정비</p>

대상화물(하선(기)감시화물 및
운송추적감시화물)을 말한다.

나. (생략)

다. 「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
관한 고시」 제2조제1호와 제2호의
이사자와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
이사물품(이하 “이사물품등”이라
한다.)

라. 「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
관한 고시」 제17조제1항과 제2항
및 제41조에 따른 유치물품 및
예치물품(이하 “유치물품등”이라
한다.)

마. 「보세관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
제4조제1항에 따른 보세관매장 판
매용 물품(외국물품만을 말한다.

----- 운송추적감시화물)

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-----

한다)

라. -----

한다)

마. -----

○ 마침표 삭제

○ 마침표 삭제

○ 마침표 삭제

이하 “보세판매용물품”이라 한다.)

2. ~ 4. (생략)

5. “반입후검사화물”이란 세관장이 제 3조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하선(기)장소 또는 장치예정장소에서 이동식검색기로 검사하거나 컨테이너적출시 검사하는 화물을 말한다.

6. ~ 8. (생략)

9. “세관지정장치장”이란 「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10. “세관지정 보세창고”란 세관장이 관할구역내 영업용보세창고중에서 화물의 감시·단속이 용이한 곳으로 관리대상화물 등을 장치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지정한 보세창고를 말

-----한다)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
----- 컨테이너 적출시 -----.

6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----- 「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」 -----.

10. ----- 보세창고등”이란 세관장이 관할구역 내 「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용보세창고 또는 「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

○ 띄어쓰기 수정

○ 다른 고시명 수정

○ 영업용보세창고 개념 명확화

○ 자유무역지역 추가하여 실제 운영 현황을 반영

한다.

<신 설>

제3조(선별기준) ① 세관장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4조(환적화물의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

시」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부호를 부여받은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의 소재지 중--- 장소를 ---.

11. “컨테이너 중량측정기”란 검색기 검사장소에 설치된 계측기를 통하여 컨테이너 운송차량 및 해당 차량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 등의 중량을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.

제3조(선별기준) ① ----- 선박회사 또는 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4조(환적화물의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

○ 컨테이너 중량측정기 운영 확대에 따른 정의 규정 신설

○ 용어정비

○ 환적화물의 개념 명확화

시대상화물 적용대상) 세관장은 환적 화물의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기류 등 위해물품·마약류·수출입금지품·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세관장이 밀수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.

제5조(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선별) 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시대상화물 적용대상) -----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환적화물에 대하여 총기류 -----

검사 또는 감시할 -----.

제5조(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선별) ①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수(중)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

○ 조문정비

○ 중량 측정이 필요한 화물에 대한 검사 근거 규정 신설

4. (생략)

② 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「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」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

2. ~ 4. (생략)

③ ~ ⑦ (생략)

제6조(검사대상화물의 하선(기) 장소)

① 검색기검사화물, 반입후검사화물, 수입신고후검사화물 및 감시대상화물의 하선(기)장소는 「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」 제1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-----
----- 「컨테이너관리에
관한 고시」 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검사대상화물의 하선(기) 장소)

① -----

----- 제15

○ 다른 고시명 수정

○ 다른 고시 근거 규정 및 용어 정비

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선사(항공사)가
지정한 장소로 한다.

②·③ (생략)

④ 세관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
지정하는 하선(기)장소는 다음 각 호
의 순서에 따른다.

1. (생략)
2. 세관지정 보세창고

3. (생략)

제7조(특송물품 등의 장치) ① 특송물품
· 이사물품등·유치물품등과 보세관
매용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보세구역
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(생략)

조제4항제3호와 제28조제3항제3호에
따라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보세창고등

3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특송물품 등의 장치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○ 제2조(정의) 변경된 규정
반영

2. 이사물품등 및 유치물품등: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

3. (생략)

② 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과 세관지정 보세창고의 운영인은 관리대상화물을 일반화물과 구분하여 장차해야 한다.

제8조(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관리절차) ① (생략)

②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에 대하여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에 적재화물목록제출자에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사실, 하

2. -----
----- 보세창고등

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화물관리인 또는 운영인(「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부호를 부여받은 자 및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“운영인”이라 한다)-----.

제8조(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관리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검사대상 또는 중량측정 대상으로

○ 제2조(정의) 변경된 규정 반영

○ ‘운영인’의 개념 명확화
○ 조문정비

○ 중량측정 대상 해당 여부를 검사대상 선별사실과 함께 통보하도록 조문 정비

○ 검사화물 반입지시서 외

선(기)장소, 검색기 검사장소 등을 별
지 제1호서식인 검사대상화물 반입지
시서를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.

③ 세관장은 감시대상화물에 이상이
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색기검사화
물 또는 반입후 검사화물로 변경하여
검사할 수 있다, 이때 검사대상으로
선별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나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
1. (생략)

2. 보세운송신고인

3. 보세구역운영인(자유무역지역의 입
주기업체 및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
받은 자를 포함한다)

-----별
지 제1호서식의-----
-----등-----.

③ -----
----- 검사대상화물-----
----- 있다. -----
----- 하나에 해
당하는 자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「보세운송에 관한 고시」 제2조에
따라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신청
을 할 수 있는 자

3. 제7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또
는 운영인

적재화물목록 심사결과를
통하여도 선별사실 확인이
가능한 실무상 현황을 반영

○ 검사방법 제한하는 문구
수정

○ 조문정비

○ 의미 명확화

○ 의미 명확화

4. 화물관리인

④ (생략)

제9조(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
의 검사 및 조치) ① (생략)

<신설>

② ~ ⑥ (생략)

제11조(특송물품 등의 검사 및 조치) ①
특송물품·이사물품등·유치물품등과
보세판매용물품의 검사절차·검사방법

4. 적재화물목록에 기재된 화물의 수
하인 또는 통지처

④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
의 검사 및 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세관장은 검색기검사화물 중 중량
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에
대하여 검색기 검사장소에서 컨테이너
중량측정기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운
송차량과 그 차량에 적재된 컨테이너
화물 등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다.

③ ~ ⑦ (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
와 같음)

제11조(특송물품 등의 검사 및 조치) ①

○ 의미 명확화를 위한 조문
수정

○ 중량측정기 운영 확대에
따른 검사방법 규정 신설

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4. 보세판매용품은 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고시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② (생략)

제12조(검사 입회 및 서류 제출) ① 세관장은 개장검사를 실시할 때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들로 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들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·검사장소·입회가능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.

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입회 통보를 하여도 검사일시에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입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-----
따른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검사 참석 및 서류 제출) ① ---

----- 참석이
필요하다고 -----
참석요청-----
-- 참석할 ----- 검사일시·검사
장소·참석가능시간 -----.

② ----- 검사참석 --

----- 참석

○ 다른 고시명 수정
○ 법령정비권고 용어
(의한다 → 따른다)

○ 법령정비권고 용어
(입회 → 참석)

○ 법령정비권고 용어
(입회 → 참석)

○ 조문정비

회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보세구역의
화물관리인(운영인)이나 그 대리인의
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세관장은 제9조에 따라 개장검사를
실시하는 화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검
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
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
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
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제13조(검사대상화물의 해제) ① 화주
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
는 제3조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
또는 감시대상화물이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
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사대상화물

하지 ----- 제7조제2항에 따른
화물관리인 또는 운영인-----
참석하에 -----.

③ -----

----- 경우 법
제266조제1항에 따라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검사대상화물의 해제) ① -----

○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
요구에 대한 근거조항 명
확화

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서류는 우편, FAX,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보세공장, 보세건설장, 보세전시장, 보세판매장에 반입하는 물품인 경우

3.·4. (생략)

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해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제신청의 사유 등이 타당하고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된 것을 해제해야 한다.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공장-----
보세판매장 및 「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---

3.·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감시대상화물
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○ 근거규정 명확화 및 개정의견 반영
(보세산업지원과)

○ 우범성 여부 판단 후 해제 여부 결정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

③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 대상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「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5조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(수입업체)가 수입하는 물품
3. 4. (생략)
5. 그 밖에 세관장이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화물

④·⑤ (생략)

제14조(보세운송) ① 검사대상화물·특

③ -----

검사 또는 감시의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
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(수입부문)-

3. 4. (현행과 같음)
5. -----
검사 또는 감시----- 인정하는 --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보세운송) ① -----

○ 의미 명확화

○ 관련고시(「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)에 따른 용어정비

○ 의미 명확화 등 조문정비

송물품 및 이사물품등의 보세운송 절차는 「보세운송에 관한 고시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제2조제4호에 따른 즉시검사화물의 보세운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.

1. (생략)

2. 「검역법」·「식물방역법」·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·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·「화학물질관리법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지정된 보세구역으로 운송해야 하는 경우

3. 화주가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검사대상화물 검사시 입회가 어려운 경우로서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1. (현행과 같음)

2. 「검역법」-----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-----

3. -----
----- 참석이 -----

- 띄어쓰기 수정
- 타법령명 수정

- 법령정비권고 용어 (입회 → 참석)

4.·5. (생략)

② 유치물품등의 보세운송 절차는 「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③ 보세판매용물품의 보세운송 절차는 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15조(출입 통제) 세관장은 검색기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구역을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다.

제16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(매 5년

4.·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따른다.

③ -----

----- 따른다.

제15조(출입 통제) -----

통제할 -----.

제16조(재검토기한) -----

----- 2024년 1월 1일-----

○ 법령정비권고 용어
(의한다 → 따른다)

○ 법령정비권고 용어
(의한다 → 따른다)

○ 띄어쓰기 수정

○ 재검토기한 재설정

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
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
하여야 한다.

-----.